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1.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가. 제정 이유

○ 「베트남・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」(기획재정부령 제640호, 2017. 11. 29. 공포・시행)의 유효기간이 2022년 11월 28일 만료되어 「관세법」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, 해당 물품 중 베트남 및 인도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

나. 제정 내용

○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해 5년간 덤핑방지관세 부과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○ 향후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의 덤핑 수입을 차단하여, 동 물품의 덤핑 수입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를 방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특이사항 없음